

■ Power!! 경기복지!!

가칭)6.13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실무위원 워크숍 회의자료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가칭)6.13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대책위원회

실무위원 워크숍

회의 개요

- 일 시 : 2017. 12. 14.(목) 13:00
- 장 소 : YBM연수원 소강의실
- 참석대상 : 실무위원 25명
- 주요안건
 - 특강 사회복지 정책의제 작성법
 - 사회복지 정책의제 선정 안
 - 향후계획 및 기타논의

1 특강 - 사회복지 정책의제 작성법

- 특강 사회복지 정책의제 작성법
강의 자문교수 이인재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2 사회복지 정책의제 선정(안)

- ※ 붙임참조

※자료공유 : <https://ggcsw.cloudike.kr>(이메일: ggcsw@hanmail.net, 비밀번호: gg1234)

3 향후계획 및 기타논의

- 의제작성 및 제출(안)
 - 의제작성
 - 공통의제
 - 분야별의제 제안단체별 작성
 - 의제작성 형식 필요성 현황 및 문제점 대안제시
 - 제출기한 까지 예정

□ **향후계획**

추진일정 안

추진내용 \ 기간	17. 12월	18. 1월	18. 2월	18. 3월	18. 4월	18. 5월	18. 6월
회원단체 협약식							
정책의제 수립 및 자문							
의제 공약화 제안 및 홍보							
도지사 후보초청 강연회							
도지사 후보초청 토론회							
평가회							

□ **논의사항** 의제작성 방법 형식 및 제출기한 향후계획 관련 논의

가칭)6.13 지방선거, 경기도사회복지책임위원회 실무위원 명단

연번	단체명	전화번호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	김민수	기획조정위원장	공동대표
2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292-0795	박상호	안산시장애인복지관장	공동대표
3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840-5303	이원형	평택북부노인복지관장	공동대표
4	경기복지시민연대	215-4399	정창욱	사무국장	공동대표
5	경기도아동복지협회	252-3060	한경희	회장	공동대표
6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222-6097	박진희	감천장요양원장	
7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032-668-4107	신민우	수원시니어클럽 실장	
8	경기도재가노인복지협회	391-8025	조성하	사무국장	
9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243-1486	임형묵	사무국장	
10	경기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	032-325-3002	이승봉	사무국장	
11	경기도농아인협회	252-6420	이정숙	사무처장	
12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213-7722	안미자	사무처장	
13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244-7015	이상민	사무국장	
13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548-2610	김희현	화성아름마을 원장	
14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256-6073	이금희	소망재활원 시설장	
15	경기도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401-1511	박영욱	회장	
16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244-1030	윤정란	과장	
17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247-7721	한은정	사무국장	
18	경기사회복지시설협회	647-0909	김미경	회장	
19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846-4232	정성운	사무국장	
20	경기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220-7916	강성훈	전략사업본부장	
21	경기도사회복지관협회	311-4482	이은아	군포가정복지사관 부장	
22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252-7554	최미숙	사무처장	
23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213-8551	김종태	사무총장	
24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232-3036	강홍배	사무국장	

경기도사회복지연대회의 실무위원 워크숍

사회복지 정책의제

NO	단체명	의제명	제안이유 및 필요성	비고
1	경기도노숙인시설연합회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 의제) 취약계층 시장형 사업단 세부적 지원기준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장애인, 다문화, 노숙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단순 근로성 공공 일자리가 아닌 시장경제 내에서의 사업단을 형성을 운영하고 있으나, - 자본, 기술 등에서 일반업체와의 제품, 마케팅 등 다각도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운 점이 있음. - 이에 따라 도내 시장형 사업단에 대한 홍보, 재무설계, 기술 등에 대한 해당 분야 일반 우수업체와의 연계를 통한 컨설팅 지원 등 세부적 지원 기준 마련 필요함. 	
		<p style="text-align: center;">(분야별 의제) 고령 노숙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 노숙인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령화(2025년) 사회에 진입하는 시점에 전체 노숙인의 70% 이상이 65세 이상의 고령 노숙인으로 분류됨. - 경기도의 노숙인 시설 중 고령 노숙인에 대한 재활, 요양 시설은 4곳이며,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활시설에서는 고령자에 대한 신체적 요건의 문제로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 이러한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주요 자활 시설에 대해 고령 노숙인의 자활을 위한 특성화된 사업과 단기적 보호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함. 	

2	경기도노인복지관협회	경기도형 50+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노인복지관을 활용하여 복지관 내 센터(예 노인상담센터)를 설치 또는 프로그램 공모를 통해 시범 운영 - 50+센터(인생이모작센터)와 관련한 기초 조사 필요 → 경기복지재단 조사 진행 - 서울시 50+센터 추진현황 등의 자료 주무부서(복지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등)에서 파악 후 경기복지재단과 협의 - 50+센터(인생이모작센터) 조례 추진 상황 파악 → 주무부서 확인 - 베이비부머 세대와 관련한 주무부서 필요 	
		보조금 지원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규모 및 직원 수에 의해 유형별(가, 나, 다형) 운영비 지원 근거로 도 및 시·군비 매칭펀드 형태로 교부되고 있으나, 2005년 지방이양 당시 복지부 지침 기준으로 현 교부상태는 맞지 않음. - 경기도 교부지침 마련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관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실적인 예산편성 필요 - 재정이 열악한 시·군별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복지격차 해소 	
		종사자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통합예산 집행의 형태는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정수당 지급하지 못함 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대표는 시간외수당을 상시적으로 위반되고 있는 상황임. -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지준 마련 필요 - 시간외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제안. 	

3	경기도노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노인복지시설연합회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요양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적용 - 사회복지법인 산하 요양시설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입소 비중 높아 - 노인복지법상의 시설지원 기준 미적용으로 인한 요양(수가체계) 종사자의 최저시급에 맞추는 열악한 처우 - 도내 사회복지분야 중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 여성, 노인(양로) 등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달리 요양시설 제외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 	경기도 내 요양시설 81개소 (종사자 3,749명)
4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단일임금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 법률 및 조례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단일임금체계(안)을 2019년부터 시행 할 수 있도록 제안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분야별, 직능별, 사업종류별, 지역별, 규모별로 처우 및 지위향상을 기대할 수 있음. 	
4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보조금 지원체계 현실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조금 지원은 첫 번째로는 국비지원, 지방자치지원에 따라 다르며, 두 번째로는 시설종류에 따라 통합예산, 2원화된 보조금 지원방식이 다름. - 이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부족과 최저배치인력 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계약직 등 운영에 질을 떨어뜨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2원화된 보조금 또는 최저배치인력 기준 등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인 보조금을 통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환경 구축이 필요함. 	

5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	경기도사회복지 종합센터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직능 및 유관기관의 경우,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보유하지 못한 체 임대 사무실 또는 사회복지시설·기관 내에 사무국을 두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이에 불안정한 사무국 운영과 단체마다의 운영을 위한 재정적 부담은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 또한, 현재 장애인 관련 단체 일부는 누림센터에 입주하여 회의실 및 교육장 등 공간마련을 통해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누림센터 역시 사용빈도가 높아 포화된 상황이다. - 따라서, 사회복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직능 및 유관단체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종사자를 위한 분야별 전문화·다양화된 교육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한 경기도사회복지종합센터 건립이 절실하다. <p>※ 전국 17개 시·도 중 9개 지역에서 복지회관 성격의 직능단체 공동입주 형태의 공유건물(공간)을 마련·운영하고 있음</p>	
		사회정책 부지사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본예산 기준, 경기도 전체예산 19조 6,703억원 중, 보건복지국(7조 2,319억원/36.8%)과 여성가족국(16조 9,758억원/11.87%)의 복지관련 예산이 전체예산의 36조 6,461억원인 48.6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과거 연정이 시작되면서 사회통합부지사의 경우 보건·복지, 여성,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부지사제도가 신설된 사례가 있다. - 특히, 도 전체예산에서 복지관련 예산이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가 계속적으로 증대됨에 따라 사회정책부지사를 도입하여 경기도의 복지증진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6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클럽 확충과 인력 충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은 국책 사업으로서 매년 일자리 사업량이 증가 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 할 수 있는 수행기관은 한정적 이여서 수행 할 기관의 설립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에 의거하여 설치가 가능하므로 각 시군에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그러므로 경기도내에 미 설치된 시.군에 시니어클럽을 설치하여 다가올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경기도가 먼저 대비해야 합니다. - 인천과 서울의 경우는 많은 자본을 투입해 노인일 자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는 이에 비하면 너무도 부족합니다. - 또한 이를 수행하기 위한 수행 인력이 충원 없이 10여년을 수행 해 오다 보니 이제는 한계치에 다 달았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을 위해 이제는 사업량에 맞는 인력충원이 필요로 할 때입니다. <p>※ 경기도 31개 시.군 중 시니어클럽 미설치중인 15개 시.군에 확대 설치</p>	
		경기도 노인일자리 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는 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그중 노인일자리 생산품은 법적 지원 없이 일반 시장을 대상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 같은 맥락의 사회적 일자리 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노인 일자리 생산품도 우선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7	경기도아동복지협회	<p>퇴소아동 자립생활관 설치</p>	<p>○ 아동복지법 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로 자립지원시설이라 함.</p> <p>○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p> <p>○ 전국 자립지원시설 설치현황 : 12개소 230명 보호 중(2016.12.31.) (단위 : 개소, 인원)</p> <table border="1"> <tr> <td>서울</td><td>3</td><td>83</td><td>광주</td><td>1</td><td>18</td><td>충남</td><td>1</td><td>18</td></tr> <tr> <td>부산</td><td>1</td><td>24</td><td>대전</td><td>1</td><td>14</td><td>전북</td><td>1</td><td>14</td></tr> <tr> <td>대구</td><td>2</td><td>38</td><td>충북</td><td>1</td><td>14</td><td>전남</td><td>1</td><td>7</td></tr> </table> <p>○ 자립지원시설 설치의 필요성 현재 경기도는 퇴소아동을 위한 공식적인 자립생활관이 하나도 없으며 경기도아동복지시설협회가 운영하는 5층 다세대주택(27실)이 민간자원으로 운영되고 있음.</p> <p>○ 가장 최악의 상황에 있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논리에 관계없이 무조건적 지원이 필요함.</p>	서울	3	83	광주	1	18	충남	1	18	부산	1	24	대전	1	14	전북	1	14	대구	2	38	충북	1	14	전남	1	7	
		서울	3	83	광주	1	18	충남	1	18																					
부산	1	24	대전	1	14	전북	1	14																							
대구	2	38	충북	1	14	전남	1	7																							
<p>아동양육시설 지역사회중심 다양한 시범사업</p>	<p>○ 제안이유</p> <p>- 아동청소년의 인구 감소와 더불어 양육시설 보호아동 또한 감소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심각해지고 있음.</p> <p>- 양육시설 운영의 노하우, 지역사회 중심에 있는 양육시설의 물리적 환경 등 기존의 양질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아동청소년, 나아가 가족지원서비스의 허브(hub)화가 필요함.</p>																														

		<p>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아동청소년 친화경기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 친화도시 구축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 : UN기준 만17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 28만명, 아동청소년은 줄고 있으나 아동청소년 문제는 심각해짐. ○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 18세미만 모든 아동들이 권리를 온전히 누리는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말함.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는 아동친화적 법체계, 전담기구 설치, 아동 관련 예산 확보 등 10개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도시에 대해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하고 있음 ○ 아동친화도시 인증현황 : 서울 성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송파구, 전북 군산시, 전북 완주군, 부산 금정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오산시(2017) ○ 경기도의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이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 현재 경기복지거버넌스를 통해 시범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아동위원회 운영을 시군단위로 확장시킴이 필요함. 	
8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p>중증의 성인발달장애인 수당제도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발달장애인 중에 자립이 어려운 중증의 경우, 부모(가구)가 부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물론 낮 시간에 주간(보호)활동센터 등을 이용하지만 이용료 부담(약 20만원~30만원)이 있음. - 만약 이들이 거주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시설에 더 많은 정부 지원이 되어야 하지만(약 월150~200만원), 주간활동센터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회비용이 절감되는 결과가 나타나며 이는 탈시설화의 방향과 맞음. - 따라서 거주시설에 보내지 않고 주간활동센터(본인 수입이 전혀 없는 활동)만을 이용하는 부모가구에 대하여 인센티브가 필요함. 	

9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장애인단체 육성조례 제정	<p>○ 장애인단체 지원조례 제정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p> <p>-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p>- 제63조(단체의 보호·육성)</p>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p> <p>○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의 제정 필요성</p> <p>- 장애인단체의 안정적 운영</p> <p>장애인단체종사자의 잦은 이직 ->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업무 능력 한계 -> 장애인단체 서비스의 질에 부적 영향 -> 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질 높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단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 재정지원 -> 서비스 질 향상장애인 당사자가 주 회원인 장애인단체는 회비 모금의 한계, 후원금의 모금의 어려움 등으로 자부담 재정확보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다. - 이처럼 자체 재원으로 운영할 수 만 있다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고 정부가 장애인단체 육성을 국가 정책으로 법에 담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장애인단체의 어려움을 가만하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단체가 재정확보의 안정성을 이루어야 한다. <p>○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제정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4월 보은군에서 처음으로 “보은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시작으로 2017년 9월 “순창군 장애인 단체 및 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총 18개 시·군에 장애인단체를 지원하는 유사조례가 제정되어 운영 중 	
10	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소규모시설 지원센터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 시설과 소규모시설정책을 실행하고 있지만 인력기준(노동법)과 지원기준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행정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 이러한 정책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지원센터를 만들어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한다.(영양식단 지원, 연차지원, 교육지원, 야간지원, 긴급지원, 인권지원 등) 	(단기보호센터, 그룹홈, 체험홈, 주간보호센터 등)

		<p>탈시설지원 규정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시설 정책의 일환으로 장애인시설 장애인 정원의 10% 초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함.(시설에서 전원하면 입소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정원이 충원된다. 그러면 시설에서 지역사회시설 또는 가정, 소규모시설로 이동한 후 적용인 안 될 경우 시설로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오는 상황이 발생이 되어 시도를 안함) 	<p>거주시설에서 소규모 또는 지역사회 시설로 복귀를 권장하기 위함</p>
		<p>사회복지대표자 채우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장과 대표이사들 겸임일 경우 대한 퇴직금이 보 조가 안 된다. 그럴 경우 사기저하 및 안정된 노후가 보장이 안 이루어져서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시설장 해임, 위탁시설장 경우 위탁취소, 계약 등의 이유로 실업이 될 경우 고용보험 지원 및 퇴직지원금이 필요함. (퇴직금/퇴직지원금 보조금 지원 및 후원금 사용가능토록 함) 	<p>단, 회계부정, 운영부정 등의 경우 제외</p>
<p>11</p>	<p>경기도 장애인복지시설협회</p>	<p>탈시설화 관점, 개별적 삶 지원을 위한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여건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재활교사 인력, 현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으로 2교대 기준 교사 1명 지원을 <u>3교대 가능하도록 추가인력지원</u> * 중증장애인 4.7명당 교사 1명 - 최근 탈시설을 논하며, 탈시설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향에 대한 혼선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이해 관계자들 간의 충돌도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관점의 삶의 질 보장이며, 선택권의 존중일 것이다. - 또한 장애영역이 너무나 다양한 점을 고려할 때 특정 장애영역의 입장만을 주장할 때는 제도와 정책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도 반듯이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 중증 장애인통계 - 현, 거주 시설의 서비스 인력 직무분석 (생활재활교사 시간단위별, 1명당 담당 이용인 수 분석

- 50년의 역사를 가진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우리사회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부터 민간중심의 복지실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탈시설의 일면적 논리로 그동안의 기여와 헌신이 폄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 무엇보다 전문적 관점에서 그 장애특성상 시설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에 대한 몰이해로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적 주장이 확산되고 결국 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결국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생활환경과 서비스 질이 장애인의 자기결정과 개별적 삶 지원에 미흡했기 때문임을 부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중증장애인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하며 그 가족의 부담부담을 줄여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함께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우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하다.**
- 즉, 중증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집단생활에 따른 획일적 일상의 강요, 선택권의 비존중을 극복하고, 인권을 기반으로 개별적 삶이 가능하도록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한 지원 필요하다
- 이를 위해 최우선은, 거주시설의 인력기준을 현실적으로 늘리는 것이다.
- 거주시설의 인력은 중증장애인인의 개별적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인력기준으로, 단순히 소규모화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 현 인력기준은 종사자의 인권 뿐만아니라, 장애인의 인권도 침해될 수밖에 없는 기준으로 국가가 국민의 인권침해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채용의 문제로 개선하지 못하고, 개선속도가 지나치게 늘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 현, 장애인을 직접 케어하는 종사자 인력기준은 장애인 4.7명당 2명으로 2교대기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2교대 기준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시간 근로에 따른 피로와 교사 1명이 근무 시간 때 10명을 케어 해야 하는 기준이다. 이를 3교대근무가 가능하도록 4.7명당 1명의 추가인력을 경기도가 지원하여 공공일자리 창출과 장애인의 개별적 삶지원이 가능하도록 견인해야 할 것이다. - “시설같지않은 시설”이라는 슬로건아래 개별적 주거와 시설에서의 주거가 같은 삶의 환경이 되도록하며, 장애인의 특성과 취향을 고려한 단지 선택의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한 정책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p style="text-align: center;">경기도내 의료서비스가 강화된 최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시설의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여년의 역사와 함께 거주시설은 민간인의 자선적 선의로 시작되면서 단지 생명을 보호할 수밖에 없던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따라서 사회환경이 열악하여 그누구보다 생명이 위협받던 장애인들이 공동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장애의 특성은 고려되지 못하였다. - 현,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그중 와상장애인도 상당수 각 시설별로 흩어져 보호되고 있다. - 이는 거동이 가능한 장애인이나 와상의 최중증장애인이거나 함께 생활하면서 상대적으로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질 강화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양병원 활용방안 과 어린이병원의 운영 문제점 비교분석 후 -경기도내 특별시설의 운영모델 설명

			<p>어려움이 있고, 인력배치기준과 인력의 전문성 미흡으로 어려운 실정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tube, PEG등에 의해 섭식을 하고 있거나 상시적으로 Keeping Poly를 해야하는 등 의료적 서비스가 전문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명의 간호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고, 사회복지인력이 보충해야하는 상황이며, 전문의의 상시적 관찰이 필요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의료인력과 의료서비스가 강화된 특별시설의 운영이 필요하다. 	
		시설 평가제도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제도의 혁신 	
12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인력지원 지침 준수 (경기도 지침 준수)	<p>[경기도장애인복지사업안내] 에 명시된 인력지원기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p>시설장 1명, <u>기능직(운전, 조리, 사무) 1명,</u> <u>사회재활교사 3명(이용인 4명당 교사 1인 추가지원)</u></p> </div> <p>인력지원 지침을 준수하여 장애인의 시설접근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u>장애인 4명당 지원인 1명</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직 지원 - 4:1지원현실화 - 시설최소 인력 5명 (이용인 대비 추가지원)
		중고령 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설치 (40세이상~65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사회에도 급격히 고령화 되어가는 장애노인에 대한 대처방법이 부각되고 있다. 우선 장애노인에 대한 기준정립(연령)이 필요하며, 40세이후의 중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간보호 시설이 별도로 설치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중고령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별 중고령 장애인 욕구조사 - 중고령 시설 설치 및 기존 시설 전환

		<p>장애인주간보호 시설 직접서비스 인력기준변경 (지원인력 3:1 기준변경)</p>	<p>현재 인력기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p>시설장 1명, 기능직(운전, 조리, 사무) 1명, 사회재활교사 3명(이용인 4명당 교사 1인 추가지원)</p> </div> <p>변경 인력기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p>시설장 1명, 기능직(운전, 조리, 사무) 1명, 사회재활교사 3명(이용인 3명당 교사 1인 추가지원)</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3:1 기준) - 장애인 거주시설 (4.7:2 기준)
13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활성화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보장 - 근로장애인 희망지원금과 훈련수당을 지급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제도화 - 사회보험부담금 및 퇴직연금 지원 	
		경기도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인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시설평가를 경기도에서 주관하여 실시, 인증제 도입 	
		경기도 보조금 시군 매칭비율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는 현재 시군과 매칭하여 지방이양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10% 보조금을 지원하고 90%가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음. - 시설에서는 경기도 지침을 따르려고 해도 시군의 의지에 따라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음.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지원비율을 높이고 경기도의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구속력을 발휘해야 함. 	

14	경기도재가노인복지관협회	재가노인복지팀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복지의 중심이 되는 재가노인의 욕구와 분야가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과 안에 재가복지팀을 구성하여 재가노인지원센터, 356어르신돌봄, 노인돌봄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등의 재가사업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 - 일원화된 창구를 통해 현장에서 재가노인복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가어르신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기능강화 및 위기노인통합사례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으로 어려운 어르신 가정에 찾아가 제공하는 재가복지사업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비롯하여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독거노인친구만들기)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중에 있다. - 서비스 이용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중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가 반복되어 재가사업만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재가복지사업에 통합운영되는 지자체가 많아 서비스 연계가 거의 단절된 상황이므로 통합적 위기 지원을 위해서 이들의 통합운영이 필요하며, 지역 내 위기노인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 재가노인지원센터에서는 지역 내 취약 및 위기노인의 대상자를 발굴하고 의뢰받아 전문적인 초기상담을 진행하여 통합적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허브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p>경기도 ‘사회통합 연수원’ 건립 (장애인연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내 장애인편의시설이 완비된 중증장애인 이용 가능 전용 장애인연수원 부재(일본 빅-아이센터, 서울 여성프라자, 서울 장애인회관 참고) - 전국 및 경기도 장애인이 경기도권역에서 연수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증장애인 대상 관광이 필요할 시 이용가능 숙박시설 부재 - 경기도내 일원화된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체험센터, 장애인전용 대극장, 장애인 전용 체육센터 등의 세부 사업 추진 필요 - 경기도가 갖는 독보적인 상징성을 위해 오사카市 빅-아이 센터 같은 모델의 이용시설 필요 	
15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p>경기도 사회적 약자 택시회사 설립 운영 (장애인 등 택시운전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에서 ‘장애인택시운전원양성사업’ 을 통해 100여명의 장애인이 취업 후 대체로 만족한 상태이나 지속가능성에 다음과 같은 문제 발생 - 근로시간 과중에 비해 낮은 임금 - 장애로 인한 방어운전 및 그로 인한 저조한 수입 - 저조한 수입을 보충하기 위한 개인건강 악화 ○ 장애인 등 택시운전원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경기도의 회사 설립 지원 - 장애인 등 택시운전원의 소득보장 및 직업 안정에 따른 “삶의 질” 대폭 향상 - 장애인, 저소득층 및 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 - 장애인택시운전원 등의 사고율을 낮춤으로 시민 안정성 확보 - 경기도내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공적 롤 모델 제시 	

		<p>경기도내 중증장애인이 이용가능 대중이용시설 확대 사업추진 (배리어프리 빌리지 (barrier-free village)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음식점의 96%, 슈퍼마켓의 98%, 이·미용실의 99%가 장애인 접근로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의무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발표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300제곱미터 이하인 근린생활시설(생활밀착형시설)의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실, 편의점 등은 휠체어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 - 지역 내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중이용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기준 완화 및 보완, 관련 제도 추진이 필요한 상황 ○ 법적 제재보다 긍정적 유도를 위한 제도 및 사업 필요 - 배리어프리 빌리지(barrier-free village) 인증조례 제정 - 배리어프리 빌리지 인증 지원사업 추진(설치 지원, 컨설팅 등) 	
16	<p>경기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협의회</p>	<p>청소년 복지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전달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복지 분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중장기 계획, 그리고 이를 실천하고 전달할 전달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 -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부 청소년복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복지지원법을 통해서 청소년 기관에서 일부 복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음. - 청소년 복지 사업 검토를 통한 중·장기적인 청소년 복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달할 청소년 복지 전달체계를 구축 하여 파편화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p>청소년 자립 및 자활 지원 사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 후기 무직청소년, 그 밖의 이유로 인해서 가정에서 보호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 및 자활 서비스가 확대 운영돼야 함. - 이를 위해 청소년 자립시설 확충(자립지원관)과 더불어 기존 시설에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전·월세 지원 사업, 청소년 쉼어하우스 사업 등 대안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고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인턴십 제도 및 청소년 친화기업제 도입 시급하게 필요함. 	
		<p>청소년 복지 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청소년 복지 시설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도 못 미치는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임. - 하지만 청소년 복지를 수행하는 직능은 대부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적용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에 향후 청소년 복지 영역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p>17</p>	<p>경기도정신재활시설협회</p>	<p>정신재활시설의 적정 시설 설치 운영 및 복지서비스 사업의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H를 통한 임대 및 기부채납 후 운영자 선정방식의 위탁운영 - 유형별 시설 시별로 배치운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가 되는 맞춤형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구현 - 시대적 변화에 맞춘 정신건강복지법을 확대와 발전을 위한 주관부서에 사회복지직 배치 : 현재 정신재활시설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관리 감독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업무 추진을 민관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직 업무배치 및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 체계 구축 	

		<p>정신보건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명확한 역할 정립과 촘촘한 연계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회전환시설(halfway) 탈원화의 출발점이 되어줄 지역사회 전환시설(halfway)의 명확한 역할 정립 - 복지형 주도로 정신건강법에 맞춘 복지서비스 제공(의료형 최소한) - 입소대상 평가를 통한 초기 적정서비스로의 배치 - 지역의 응급입원 당사자의 위기 대응을 위한 쉼터의 역할 (입원의 최소화) - 지역의 재활서비스와 병원의 연결다리 - 지역사회 재활서비스 허브설 (정신질환자서비스지원센터) - 거점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정적서비스 연결과 정보제공의 극대화 - 시군구에 불균형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경기도 현실을 고려한 빠른 네트워크 구축 - 강력한 경기도정신보건 전달체계의 명확한 역할 정립 - 시설 회복서비스 정신질환자에 대한 시설 정보제공 및 연계 의무화 	
		<p>경기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안정화를 위한 주거지원 강화사업 현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주거지원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 정신장애인의 주거 지원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 실시 - 체험 홈 주거지원: 독립주거 성공을 위한 거주지원 사업 	
18	경기지역자활센터협회	<p>저소득층의 공공일자리 30% 이상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공서, 학교 등 공공의 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부정책 발표로 인한 파견이나 용역 계약이 종료 되는 상황으로 오히려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공공일자리 중 30% 이상을 저소득층의 일자리로 확보를 하여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이 필요함 	

	<p>자활사업을 위한 무상 공공 임대 시설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의 자활사업과 관련한 공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자활사업과 관련한 조례에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 유상임대 시설로 구성되어 있어 원활한 사업 공간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 - 이에,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내 무상으로 판매 시설 확대, 지역자활센터 사무실과 자활근로사업단 작업장, 자활기업 매장 등 무상 임대 확대가 필요함. 	
	<p>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보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경우 타 직능에 비해 낮은 보수로 근무를 하고 있음.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 체계에는 국비 보조시설이라는 이유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이에 저소득주민의 자활,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처우에 대해 경기도 단일임금체계에 포함되도록 하며, 더불어 차별 방지를 위하여 비정규직의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보조도 필요함. 	

민선 7기 복지 분야 공약 제안

경기복지시민연대

1. 경기도형 전달체계 구축

□ 현황 및 문제점

-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 관련 사업이 약 300여개에 달하고, 각 사업별 담당기관 등 전달체계가 달라 사업 수행의 효과성 및 도민의 복지 체감도는 낮은 편
- 각 대상별 전달체계를 정비하여 사업의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

□ 대안제시

□ 읍면동 전달체계 재설계

- 문재인정부의 읍면동 전달체계 개편 방향은 행정복지센터를 혁신읍면동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을 읍면동 보건복지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추진 중
- 동복지허브화사업, 무한돌봄센터의 네트워크팀, 사회복지관 등은 사례관리의 역할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중복없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대안 마련하는 한편, 무한돌봄센터의 재구조화 과정도 동시 진행
 - 특히, 문재인정부의 중앙정부의 읍면동 보건복지사업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선택과 집중

- 노인일자리 중 공익활동일자리 급여가 확대(22만원→27만원→40만원)될 경우 기존 시장형일자리 참여자 급감으로 존폐 위기 직면
 - 노인단독일자리 외에 장애인과의 협업일자리 등 새로운 조합 고민
 - 기업체가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면 이들을 케어해 주는 노인을 매칭하여 공익활동 일자리로 투입

- 장애인의 일자리 참여 확대를 위한 대응
 - 장애인들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기존 일자리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일자리 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거나 누림센터의 기능을 확대,조정하여 종합지원기능까지 수행
 -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등의 사례 등을 발굴하여 장애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사회적경제 활성화
 - 4차 산업 혁명과 연관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예)딜라이트 보청기)하여 복지와 기술의 연계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 사회서비스진흥원 설치가 예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기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정비
 - 신설 vs. 기존시설에 기능 추가 / 예산 부담 주체(국비 vs. 지방비) 및 비중
 -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전달체계와의 연계 등을 고려하여 정비
- 복지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경기도 복지시설 평가를 경기도가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논의
 - 시설 평가·컨설팅·인증·교육 강화
 - 사회복지시설 품질관리 지원조례 제정

□ 청년을 포함한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 전달체계 재구축

-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면서 주거급여 및 관련 서비스를 주택정책과에서 담당
- 주거는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서비스이지만 부서가 달라 필수서비스와 대상자가 분리되는 문제 발생
- 현재 경기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주거취약계층과의 연계성은 크지 않은 상황
- 취약계층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와 주거복지센터 간 연계나 두 전달체계를 통합한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
- 특히 장애인 탈시설화 방향과 연계된 주거지원정책마련이 필요
 -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II센터 적정 수 산출, 탈시설 자립정착금 제도화,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주택 공급 등을 추진
 -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사후관리시스템 구축

2. 경기도 31개 시군 복지 균형발전 지원

□ 현황 및 문제점

- 경기도는 높은 지가로 인해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높아 정부의 혜택을 받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경기도 31개 시군 간 격차도 커서 사회보장 수준에 차이가 발생
- 31개 시군의 복지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도달 전략이 기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

□ 대안 제시

-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 역할은 1)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 추진 상황 매년 모니터링하고 기준선 운영에 대해 시·군 컨설팅을 실시 함
 -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
 - 31개 시군별로 제시된 7개 영역별 기준선 도달을 위한 시군의 노력을 점검
 - 전략과제 추진 상 어려운 점 등을 파악하여 수정(안)을 제시
 - 2) 시·군의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교육 및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현실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연동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등을 컨설팅
 - 특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개발하고, 복지욕구조사를 도 차원에서 동일한 설문지를 통해 실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정부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사회보장신설·변경에 대한 사전 컨설팅을 실시함
 - 2016년 10월부터 임시조직으로 경기복지재단 내 사회보장컨설팅단을 운영 중으로 각 시군에서 추진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사업 혹은 기존 사업의 변경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안을 컨설팅
 - 사회보장심의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시군이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의 통과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3. 고령사회 대응체계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노인인구의 지속적 증가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노후시간이 늘어나면서 빈곤, 질병, 무위, 고독 등 4품 문제에 직면한 노인도 증가
-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퇴직시기가 49세로까지 당겨지면서,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를 차지하는 5060세대(1,340만명)를 활용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
 - 정부는 이들을 고령자 혹은 노인 대신 '신중년'으로 규정하고 주된 일자리 → 재취업 일자리 → 사회공헌 일자리로 이어지는 인생3모작 기반 구축을 위한 계획을 발표

□ 주요 내용

- 경기도는 늘어난 수명에 맞게 100+프로젝트 추진
 - 100+프로젝트 추진 : 경기도 백(100)프로젝트('12) 버전 업
- 소득보장, 건강, 무위, 고독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5년 계획
 - 기초연금 외 소득 보장과 무위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인맞춤형 시장일자리 개발
 - 경기도 노인일자리 전달체계 개편 : 시니어클럽 확대 설치, 실버인력뱅크 법적 근거 마련 등
 - 노인돌봄서비스를 건강과 고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재구조화
 - 노인돌봄기본서비스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사업 간 통합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서비스 제공 항목 확대(경기도형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
 - 저소득 취약노인 외 중산층 노인에 대한 정책적 관심 확대
 - 그동안의 경험을 지역의 사회공헌과 연계 : 기존 노인일자리지원센터의 기능을 사회공헌활동까지 확대하거나 경기도 사회공헌정보센터를 설치하여 노인사회공헌활동 담당
-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50대(1모작) /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72세(2모작) / 생의 마무리(3모작) 등 인생 3모작 준비
 - (1모작) : 중장년이 직면하는 문제, 퇴직으로 인한 생활고,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정신적 문제, 노후대비를 위한 재무컨설팅을 담당할 전달체계 마련
 - (2모작) : 주된 직장에서의 경험을 살려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일자리 발굴 및 알선(일자리재단의 역할을 중년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는 것까지 확대)
 - (3모작) :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등에서 교육
- 노인문제 전반을 다루는 노인종합지원센터를 신설 혹은 기존 시설의 기능 확대 필요

4. 시군에 대한 경기도 복지재정 지원 비중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31개 시군 예산 중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문재인정부의 복지관련 주요 공약 이행으로 그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예를 들면, 기초보장대상자 확대, 기초연금액 인상, 장애인연금액 인상, 치매안심센터, 아동수당 신설 등에 '18년 총 2조1천673억원 소요 예상
 - 신설사업인 아동수당 및 치매안심센터의 경우 광역-기초간 재정분담 비율이 재량사항이므로 도-시군상생협력 토론회 및 예산연정간담회 등을 통해 분담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

<5대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액 추계 결과(2018~2022)>

(단위 : 억원)

	2018년				2022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총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2,570	2,166	259	145	16,567	13,759	1,847	961
기초연금 수급액 인상	7,738	5,505	446	1,786	21,574	15,350	1,245	4,979
치매안심센터 설치	658.8	527.0	65.9	65.9	479.7	383.8	48.0	48.0
장애인연금 수급액 인상	1,972	1,380	118	473	3,723	2,606	223	893
아동수당 신설	8,735	6,114	1,310	1,310	8,603	6,022	1,290	1,290
합계	21,673	15,693	2,200	3,780	50,947	38,121	4,653	8,171

주 상기 표의 도비와 시군비 배분 비율은 를 전제

주 아동수당은 내년 월부터 추진할 것을 전제

□ 대안 제시

- 시군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보조율을 상향하여 복지매칭으로 인한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
 -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경기도 부담분이 0%인 것을 운영비의 10%를 경기도가 부담하여 지역복지 격차를 조정하는 기능 강화
 - 중앙-지방, 도-시군 간 업무 배분에 따라 도의 업무 성격이 강하다고 분석된 업무는 업무배분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도비 매칭비율을 상향(조례개정)
 - 도 시책사업의 경우 현재 3:7이나, 시군의 재정자립도 및 해당사업의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보조율 적용. 단, 도 부담비율의 범위는 최소 40%에서 70%까지로 설정하여 시군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복지 사업이 균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